

# 『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동작구 제4선거구 출신 이희원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현행 조례에서는 공공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교육청 내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.

특히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사전검토를 요청해왔는데, 이는 「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」 제22조의2제4항에 규정된 시기(설계용역 입

찰공고 전)를 준용한 것으로 최근 본 조례 개정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한 데 따른 절차 재정비 결과였습니다.

그렇지만 2024년 교육부의 국가정책사업 개편으로 학교 시설 등 교육시설의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각 시도교육청 주도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,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현행 조례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.

이에 동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국가정책사업 뿐만아니라 지방정책사업 또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. 동 조례의 개정안의 문구를 수정하여 국가정책 또는 지방정책사업(개축, 리모델링 사업에 한정)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심의 수행 시기를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.

조례안 개정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기존의 방식과 같은 국가정책사업은 물론 지방정책사업을 시행할 경우, 공공건축심의 전에 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를 실시할 수 있어, 주요 국가정책사업 및 신설 사업 실행시 행정절차 간소화로 인해 신속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□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
조례 제9조의3항 제4호를 개정하여 공공건축 사업 사전 검토 수행 시 국가정책 또는 지방정책사업의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 사업계획서 첨부 및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, 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